

15. 宅地開發業務處理指針 改正案

資料提供：建設交通部 1997. 2. 1
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”을 “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제3항”을 삭제하고,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,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%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·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후 6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큰 평형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, 택지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.

제13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공급된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(다만,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큰 평형의 임대주택건설은 불가하며,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평형에서 정한 호수의 5% 범위내에서 호수초과를 허용하되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.)

별표 3 및 별표 5 중 “국민학교용지”를 “초등학교용지”로 “국민주택용지”를 “국민주택규모의 용지”로 “임대주택건설용지(장기임대주택용지 제외)”를 “임대주택건설용지”로 하고 “60㎡ 이하” “60㎡ 초과 85㎡ 이하”로 구분하며,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중 “60㎡ 이하”에서 수도권·부산권 “90%”를 “80%”로 “60㎡ 초과 85㎡ 이하”에서 수도권·부산권은 “90%” 광역시는 “80%” 기타지역은 “70%”로 하며, 표하단 주중 “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장기임대주택용지는 호당 전용면적 60

m² 이하 주택건설용지의 가격체계를 적용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1997. 2. 1 부터 시행한다.

②(임대주택건설용지 우선공급 및 공급가격에 대한 적용례) 제13조 제2항 중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우선공급 및 별표 3, 별표 5 중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조정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승인받는 택지공급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개발된 택지의 공급)</p> <p>① (생략)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13조(개발된 택지의 공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,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%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·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후 6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큰 평형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, 택지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.</u></p>

[별표 3]

택지공급가격기준

단위 : %(조성원가 대비)

현행					개정안				
구분	용도별	공급지역			구분	용도별	공급지역		
		수도·부산권	광역시	기타지역			수도·부산권	광역시	기타지역
조성원가 이하	○ 국민학교용지	70	70	70	조성원가 이하	○ 초등학교용지	70	70	70
	○ 임대주택건설용지 (장기임대주택용지제외)	90	80	70		○ 임대주택건설용지 - 60㎡ 이하	80	80	70
	○ 국민주택용지 - 60㎡ 이하 주택용지	90	90	80		- 60㎡ 초과 85㎡ 이하	90	80	70
	- 60㎡ 초과 85㎡ 이하 주택용지	100	90	80		○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- 60㎡ 이하 주택용지	90	90	80
					- 60㎡ 초과 85㎡ 이하 주택용지	100	90	80	

주 : 1.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장기임대주택용지는 호당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건설용지의 가격체계를 적용
2.~4. (생략)

주 : 1. (삭제)
2.~4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5]

합동개발택지의 공급가격 산정기준

1. 주택건설용지

단위 : %(조성원가 대비)

현행				개정안			
용도별	공급지역			용도별	공급지역		
	수도·부산권	광역시	기타지역		수도·부산권	광역시	기타지역
○ 임대주택건설용지 (장기임대주택용지제외)	90	80	70	○ 임대주택건설용지 - 60㎡ 이하	80	80	70
○ 60㎡ 이하 주택용지	90	90	80	- 60㎡ 초과 85㎡ 이하	90	80	70
○ 60㎡ 초과 85㎡ 이하 용지	100	90	80	○ 60㎡ 이하 주택용지	90	90	80
○ 85㎡ 초과 주택용지	감정가격	감정가격	감정가격	○ 60㎡ 초과 85㎡ 이하 주택용지	100	90	80
				○ 85㎡ 초과 주택용지	감정가격	감정가격	감정가격

주 : •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장기임대주택용지는 호당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건설용지의 가격체계를 적용
2. 학교등 공공시설용지 : ... 국민학교용지 ...

주 : • (삭제)
2. 학교등 공공시설용지 : ... 초등학교용지 ...

주택회보